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4-51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년 5월 13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-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- 공고기간: 2024. 05. 13. ~ 2024. 05. 26.
-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김진	1977.○.29.	0178200274100000417	₩18,000,000	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○○
2	최재순	1956.○.20.	0178200274100000412	₩18,000,000	부산광역시 북구 상리로 ○○
3	홍석	1983.○.05.	0178200274100000408	₩27,000,000	부산광역시 동구 영초길 232번길 ○○
4	신민기	1957.○.23.	0178200274100000393	₩27,000,000	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○○
5	윤성근	1967.○.03.	0178200274100004655	₩30,000,000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○○
6	이덕재	1966.○.13.	0178200274100004656	₩18,000,000	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176번길 ○○
7	배세준	1982.○.27.	0178200274100004676	₩18,000,000	부산광역시 북구 모분재로 149번길 ○○
8	최태수	1979.○.20.	0178200274100003548	₩31,860,000	부산광역시 남구 남동천로 ○○
9	이장환	1970.○.21.	0178200274100000438	₩22,302,000	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407번길 ○○
10	이동규	1982.○.30.	0178200274100003552	₩22,302,000	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24번길 ○○
11	김대영	1982.○.14.	0178200274100003553	₩22,302,000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○○
12	김동식	1971.○.10.	0178200274100003554	₩31,860,000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234번길 ○○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3	이수연	1973.○.25.	0178200274100004419	₩4,207,500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로 ○○
14	(주)라인투어	180111-0900422	0178210274100005045	₩5,797,500	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87번길 3, 2층 (연산동)
15	손자영	1986.○.26.	0178220274100003942	₩7,600,000	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21번길 ○○
16	(주)리치홀딩스	180111-0896316	0178220274100003323	₩6,637,500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221번길 22, 302호 (우동)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(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, 605호, ☎ 051-967-1204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료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